

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

(최영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0일

발 의 자 : 최영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춘례, 김태호, 노승재  
박기재, 안광석, 이은주, 정지권  
정진철, 조상호, 최기찬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이유

「문화예술후원법」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, 문화예술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문학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  
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후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후원”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·인적 요소를 이전·사용·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3. “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”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, 기업 등 법인·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 지원)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
  2.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
  3.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
  4.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은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(경비지원), 제5조(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)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나
- 서울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(제4조)을 기 추진 중에 있어 금번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,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원(제5조)에 대한 사항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

#### 〈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내용〉

조례(안)	기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내용	예산(천원)
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사업 제4조(경비지원)	○ 2020 메세나 지원 및 기부활성화 사업(서울문화재단)	550,000
	○ 2020 메세나 데이 기획·운영(서울디자인재단)	9,857
합계		559,857

- ※ 첨부 1. 2020 서울메세나사업 기본계획
- 첨부 2. 2020 기업 메세나 사업계획(안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  - “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 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   양훈

☎ 02-2180-7934

e-mail : huny101@seoul.go.kr